예 산 총 칙

2011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77,789,685	11,333,691
일반회계	318,358,326	9,550,750
특별회계	59,431,359	1,782,941
공기업특별회계	21,943,972	658,31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1,943,972	658,319
기타특별회계	37,487,387	1,124,62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185,087	35,553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1,821,796	54,654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079,231	62,377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17,047	6,511
기반시설특별회계	457,400	13,722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414,000	12,420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858,532	25,756
주택사업특별회계	9,000	270
수질개선특별회계	30,445,294	913,359

제 2 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제 4 조 (지방채 발행) : "해당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 :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계속비사업) : 2011년도 계속비이월사업은 별첨 "계속비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7 조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11,035,956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예산의 이용) :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이용 승인을 얻는 것으로 한다.